

土壤環境保全法中改定法律案

2003. 11

環 境 部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오염토양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정화하는 등 토양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양오염 발견신고 및 오염토양 반출신고제도를 도입하고, 토양정화업의 등록, 일정규모 이상 오염토양 정화시 검증 의무화를 통해 정화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토록 함과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경우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지사의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오염을 발견한 자에게 이를 신고토록 하여 오염토양을 적극 찾아내고 적법한 정화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10조의3)
- 나.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설정근거를 마련하고, 오염토양을 부지 밖으로 반출하여 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의무화하여 오염토양의 이동에 따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함 (안 제15조의3)
- 다. 오염토양의 투기를 금지토록 하여 불법처리로 인한 토양오염을 예방하고자 함 (안 제15조의4)

- 라. 오염원인자에 의한 정화가 곤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오염토양을 직접 정화해야 하는 경우 주변환경, 장래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재정적 여건에 따라 정화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의5)
- 마. 토양정화의 신뢰 향상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오염토양 정화시 토양정화검증기관의 검증을 의무화 함 (안 제15조의6)
- 바. 부실정화 방지를 위하여 오염토양 정화에 관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도록 함. (안 제23조의5)
- 사. 오염토양의 투기, 무등록 토양정화, 토양정화 검증 미실시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안 제29조제2의2호, 제29조제5호, 제30조제3의5호)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危害를 豫防하고”를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로 하고, “적정하게”를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로 한다.

제2조제1호중 “사람의 건강이나”를 “사람의 건강·재산이나”로 하고, 동조제3호 및 동조제4호중 “土壤汚染誘發施設”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하며, 동조제4호중 “特定土壤汚染誘發施設”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토양정화”라 함은 생물학적, 물리·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중의 오염물질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제5조제2항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도지사 등”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동항중 “그 조사결과”를 “그 조사결과(시장·군수·구청장의 조사결과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제4항 각호외의부분 본문중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은”으로 하고, 동항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地域에 대한”을 “다음 각호의 지역에 대한”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이”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토양정밀조사) 제5조제4항, 제10조의3제2항, 제12조,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토양정밀조사의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1항중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환경부장관, 시·도지사”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등”으로 하고, 동항중 “토양정밀조사(이하 “토양정밀조사”라 한다)”를 “토양정밀조사”로 하며, 동항 후단중 “시·도지사”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통지”를 “통지(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을 출입하여야 하는 때에는 관할 부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중 “환경부장관, 시·도지사”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환경부장관, 시·도지사,”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등, 또는”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환경부장관, 市·도지사”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등,”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중 “토양오염유발시설”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하고, 동항중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를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제23조의5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자로부터”로 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토양오염 신고 등) ①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오염사실을

발견한 자는 이를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오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오염신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원인,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이하 “오염토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원인자에게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제목 및 동조제1항 내지 동조제3항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하고, 동조제1항중 “申告한 내용을 변경(시설의 폐쇄를 포함한다)”을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내용을 변경”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및 동조제4항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하고, 동조제2항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며,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이나 누출검사 및 토양정밀조사

의 실시,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토양오염검사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제15조제1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 동조제4항 및 동조제5항은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상시측정·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치를 실시하도록 오염원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2. 당해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3. 오염된 토양의 정화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명령의 이행계획 및 이행완료 보고 등) ①제10조의3제2항, 제12조 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토양 정화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토양정밀조사결과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검증기관으로부터 토양정화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내용 및 방법에 따라 오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계획의 시정·보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0조의3제2항, 제12조 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당해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류 및 현장조사(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를 통하여 그 명령의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우려기준이내로 내려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의2 다음에 제2장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토양오염의 정화 및 책임

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 ①오염토양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화기준,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여야 한다.

②오염토양은 제2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의뢰하여 정화(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정

화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
2. 객토 및 토양개량제의 시용 등 오염농경지의 농토배양사업을 하는 경우
3. 기타 토양오염사고에 의한 오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토양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③부지의 협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오염토양을 오염부지 밖으로 반출하여 정화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오염토양 발생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오염토양의 반출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반출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거나 반출지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우려되며 오염방지계획 등이 미흡할 때에는 반출의 제한, 반출지의 변경이나 기타 신고내용의 보완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4(오염토양의 투기금지 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오염토양을 투기하는 행위
2. 오염토양의 보관·운반 및 정화 등의 과정에서 누출·유출시키는 행위
3.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오염농경지 농토배양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15조의5(위해성평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오염원인자에 의한 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오염토양을 직접 정화하고자 하는 때에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오염도, 주변환경, 장래의 토지이용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려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정화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의6(토양정화의 검증) ①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정화검증기관으로부터 정화사업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완료검사만으로 검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의 절차·내용 및 방법, 검증기관의 관리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토양정화검증기관의 검증 수수료 산정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第23條를 제15조의7로 하여 동조(종전의 제23조)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항(종전의 제23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동항(종전의 제23조제3항)제2호, 동항(종전의 제23조제3항)제3호 및 동항(종전의 제23조제3항)제4호중 “토양오염유발시설”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하고, 동조(종전의 제2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오염원인자에 의한 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양정화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당해 오염지역이 2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양정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8(자발적협약 등) ①환경부장관은 토양오염의 예방 및 오염토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와 기한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자발적인 토양오염의 조사 및 오염토양의 정화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중 “市·道知事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하고, 동 조제2항중 “市·道知事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며, 동항중 “對策基準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를 “대책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市·道知事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동항중 “수립하여”를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협의를 거친 후”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市·道知事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동항중 “시·도지사는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을 감리자로 지정하여”를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검증기관으로 하여금”으로 하고, 동항중 “감리·감독하게 할 수 있다”를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市·道知事”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5항중 “第3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가”를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오염원인자에 의한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하고, 동항중 “市·道知事”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0조 및 제21조제3항중 “市·道知事는”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3장의2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의2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제23조의2제1항 각호외의부분 본문중 “지정받은 사항”을 “지정받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하고, 동항제1호다목중 “제11조의2제2항”을 “제11조의2제3항”으로 하며, 동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제15조의6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완료검사

제23조의2제1항제2호중 “제11조의2제2항”을 “제11조의2제3항”으로 하

고, 동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중 “준수사항 및 검사수수료”를 “준수사항”으로 한다.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의2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토양관련전문기관의 토양오염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의3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호(중전의 제4호)중 “제3호의 1”을 “제4호의 1”로 한다.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3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4(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23조의3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23

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4.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한 때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때
6. 지정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년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때. 다만, 제23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제23조의5 내지 제23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5(토양정화업의 등록) ①오염토양의 정화를 위한 영업(이하 “토양정화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때에는 등록증을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의 대여 또는
도급받은 토양정화사업을 일괄하여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의6(토양정화업자의 토양환경평가) 토양정화업자가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환경평가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의 검사시설 및 장
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23조의7(토양정화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23조의5의 규정에 의한 토
양정화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결격사유는 제23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의8(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토양정화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
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
여야 한다.

1. 제2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23조의7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23조
의7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
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4. 등록 후 2년 이내에营业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
이 계속하여 2년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때

5.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토양정화사업을
일괄하여 하도급한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제23조의9(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토양정화업자의 계속공사 등)

①제23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있기 전에 착공한 사업에 한하여 토양정화공
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사업을 계속하는 자는 당해 사업
을 완료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토양정화업자로 본다.

제23조의10(권리·의무의 승계) ①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
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제2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
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기관 또는 그 업을 양도하거나 사망
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이 법에 의한 종전의 지정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다.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종전의 지정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24조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

장”으로 하고, 동조중 “제12조제1항”을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제12조”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하고, 동조제2항중 “토양관련전문기관”을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자”로 한다.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①시장·

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한 현황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 실적을 취합하여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의4를 제26조의5로 하여, 동조(종전의 제26조의4)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3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제2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4(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6 및 제26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6(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2. 제2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제26조의7(토양관련전문기관의 기술요원등의 교육) ①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한 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당해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는 자를 고용한 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호중 “제12조제3항”을 “제15조의2제4항”으로 하고, 동호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하며, 동조에 제2의2호, 제4호 및 동조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5조의4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투기한 자(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검증 또는 완료검사가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한다)

4.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한 자

5. 제2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토양정화업을 한 자

제30조제1호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하고, 동조에 제1의2호, 제1의3호, 제3의2호 내지 제3의6호, 제6의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호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로 하고 동호후단에 “(누출검사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신설하며, 동조제4호중 “감리·감독”을 “지도·감독”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를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한다.

1의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를 부실하게 하여 제15조의6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화검증 대상 미만으로 오염규모를 축소한 자

1의3.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5조의3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의뢰하지 아니하고 오염토양의 정화를 한 자 또는 동항 단서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3의3. 제1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반출신고 내용의 검토를 받지 아니하고의 오염토양을 반출한 자

3의4. 제15조의4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누출·유출시킨 자 또는 동조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농도를 낮춘 자

3의5.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을 받지 아니하고 오염토

양의 정화를 한 자

3의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
검증 또는 완료검사를 부실하게 한 자

6의2. 제23조의2제6항, 제23조의5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
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 또는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자 또는 도급받은 토양정화사업을 일괄하여 하도급한
자

제32조제1항에 제3의2호, 제4의2호 내지 제4의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
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23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4의3. 제23조의2제4항, 제23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의4. 제23조의5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의5. 제23조의6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양환경평가를 한 자

6. 제26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
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3제2항, 제15조의6, 제23조의5 내지 제23조의9 및 제26조의 7의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정화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착공하여 정화가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마목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관리대상시설”로 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관리대상시설”로 한다.

③ 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 카목 및 제4호 사목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관리대상시설”로 한다.

④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2호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관리대상시설”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總則	제1장 總則
第1條(目的) 이 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國民健康 및 環境상의 危 害를 豫防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國民 이 건강하고 快適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1條(目的)----- -----위해 를 예방하고 토양생태계의 보전 을 위하여-----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 -----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 다.	第2條(定義)----- ----- --, -----
1. “토양오염”이라 함은 사업활 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 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1.----- -----사 람의 건강·재산이나-----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土壤汚染誘發施設”이라 함은 土壤오염물질을 生産·運搬· 貯藏·取扱·加功 또는 처리 함으로써 土壤을 汚染시킬 우 려가 있는 施設·裝置·建 物·建築物 및 장소 등을 말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 ----- ----- -----, -----

한다.

4. “特定土壤汚染誘發施設”이라 함은 土壤을 현저히 汚染시킬 우려가 있는 土壤汚染誘發施設로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第5條(土壤汚染度 測定 등)

① (생 략)

② 시·도지사는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관할구역 안의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이하“토양오염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조사결과를 환경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土壤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

-----,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

5. “토양정화”라 함은 생물학적, 물리·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중의 오염물질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第5條(土壤汚染度 測定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도지사 등”이라 한다)은-----

----그 조사결과(시장·군수·구청장의 조사결과를 포함한 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은-----

-----다음 각호의 지역에 대한-----

의 地域에 대한 土壤精密調査를 실시할 수 있다. 1.·2. (생략) 3. 그 밖의 토양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u>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u> 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⑤ (생략) <u><신설></u> 第7條(土地등의 收用 및 사용) ① <u>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u> 상시측정·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土壤精密調査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지역과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測定網設置區域의 土地·建築物 또는 그 土地에 정착된 물건을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 1.·2. (현행과 같음) 3.----- -----<u>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이</u>----- ----- ⑤ (현행과 같음) <u>제5조의2(토양정밀조사) 제5조제4항, 제10조의3제2항, 제12조,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토양정밀조사의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u> 第7條(土地등의 收用 및 사용) ① <u>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u>은----- ----- ----- ----- -----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第8條(他人土地에의 出入등) ①환	第8條(他人土地에의 出入 등) ①환
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제23	경부장관, 시·도지사 등-----
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	-----
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	-----
이라 한다)은 상시측정·토양오	-----
염실태조사 또는 제5조제4항 및	-----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	-----토양
정밀조사(이하 “토양정밀조사”라	정밀조사-----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	-----
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
토지에 있는 나무·돌·흙 그 밖	-----
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양관련전	-----
문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의 허	-----관할 시장·
가를 받아야 한다.	군수·구청장-----,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	③-----
의 土地에 出入하거나 그 地上	-----
의 障礙物을 변경 또는 제거하	-----
고자 할 때에는 出入할 날 또는 障	-----
碍物을 변경·제거할 날의 3日전	-----
까지 그 土地 또는 障礙物의 所	-----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에게	-----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군사시설보호법에 의
土地 또는 障礙物의 所有者·占	한 군사시설을 출입하여야 하는

有者 또는 管理人の 住所 및 居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아니 할 수 있다. ④~ ⑥ (생략) 第9條(損失補償) ① (생략)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償을 받고자 하는 者는 <u>환경부장관, 시·도지사</u>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에게 이를 請求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토양관련專門機關의 장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는 때에는 그 損失을 입은 者와 협의하여 補償할 금액등을 결정하고 請求人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u>환경부장관, 市·도지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u>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생략)	<u>때에는 관할 부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u>)----- -----. ④~ ⑥ (현행과 같음) 第9條(損失補償) ① (현행과 같음) ②-----<u>환경부장관, 시·도지사</u> 등----- -----. ③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등, 또는----- ----- ④----- -----<u>환경부장관, 시·도지사</u> 등,----- -----. ⑤ (현행과 같음)
---	---

제10조의2(토양환경평가) ①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를 양도·양수하거나 임대·임차하는 경우에 양도인·양수인·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당해 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그 주변지역(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이하 “토양환경평가”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의2(토양환경평가) ①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 ----- ----- -----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제23조의5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자로부터-----.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第2章 土壤汚染의 規制 <신 설>	第2章 土壤汚染의 規制 제10조의3(토양오염 신고 등) ①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오염시설을 발견한 자는 이를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오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오염신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원인,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第11條(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신고 등) ①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당해 施設의 내용, 第3項의 規定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계획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申告한 내용을 변경(시설의 폐쇄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위험물안전관리법 및 有害化學物質管理法 그 밖의 環境部令이 定하는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特定土壤汚染誘發施設의 設置에 관한 許可를 받거나 登錄을 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許可 또는 登錄機關의 長은 環境부령이 定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

넘는 토양(이하 “오염토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원인자에게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를 명할 수 있다.

여 그 사실을 당해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당해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토양오염검사) ①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검사(이하 “토양오염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양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요건 및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며,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③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제11조의2(토양오염검사) ①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②-----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특정토

양오염관리대상시설

-----특정토양오

염관리대상시설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이나 누출검사 및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를 명할 수 있다.

악,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토양오염검사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을 받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당해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였더라도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우려기준이내로 내려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 등)	1.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토양오염검사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제15조(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 등)
--	---

①시·도지사는 제5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오염원인자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상시측정·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치를 실시하거나 오염원인자에게 그 조치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토양오염유발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2. 당해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3. 오염된 토양의 정화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을 받은 오염원인자는 당해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①시장·군수·구청장은-----

--.

<삭 제>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상시측정·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치를 실시하도록 오염원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2. 당해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3. 오염된 토양의 정화

<삭 제>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기 위한 정화의 종류 및 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삭 제>

제15조의2(명령의 이행계획 및 이행완료 보고 등) ①제10조의3제2항, 제12조 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토양 정화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토양정밀조사결과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검증기관으로부터 토양정화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내용 및 방법에 따른 오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계획의 시정·보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관할

<신 설>

<신 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0조의3제2항, 제12조 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당해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류 및 현장조사(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를 통하여 그 명령의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우려기준이내로 내려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2장의2 오염토양의 정화 및 책임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 ①오염토양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

화기준,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여야 한다.

②오염토양은 제2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의뢰하여 정화(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정화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
2. 객토 및 토양개량제의 사용 등 오염농경지의 농토배양사업을 하는 경우
3. 기타 토양오염사고에 의한 오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토양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③부지의 협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오염토양을 오염부지 밖으로 반출하여 정화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오염토양 발생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오염토양의 반출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신 설>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반출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거나 반출지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우려되며 오염방지계획 등이 미흡할 때에는 반출의 제한, 반출지의 변경이나 기타 신고내용의 보완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4(오염토양의 투기금지 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오염토양을 투기하는 행위
2. 오염토양의 보관·운반 및 정화 등의 과정에서 누출·유출시키는 행위
3.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
(오염농경지 농토배양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신 설>

제15조의5(위해성평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오염원인자에 의한 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오염토양을 직접 정화하고자 하는 때에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오염도, 주변환경, 장래의 토

	지이용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려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정화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의6(토양정화의 검증) ①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정화검증기관으로부터 정화사업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완료검사만으로 검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의 절차·내용 및 방법, 검증기관의 관리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토양정화검증기관의 검증 수수료 산정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第23條(土壤汚染의 被害에 對한 無過失責任) ①·②(생략) <신설>	제15조의7(土壤汚染의 被害에 對한 無過失責任) ①·②(현행과 같음) ③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신 설>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인자로 본다. 다만, 제3호(토양오염유발시설을 양수한 자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경우에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인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3.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양수한 자 및 합병·상속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오염원인자에 의한 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 토양정화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당해 오염지역이 2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양정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⑤-----

-----토양
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
오염관리대상시설-----

-----.

1. (현행과 같음)
2. -----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

4.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破産法에 의한 환가, 國稅徵收法・關稅法 또는 地方稅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u>토양오염유발시설</u>을 인수한 자 <신 설>	4. ----- ----- ----- ----- -----<u>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u>----- 제15조의8(자발적협약 등) ①환경부장관은 토양오염의 예방 및 오염토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와 기한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자발적인 토양오염의 조사 및 오염토양의 정화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第3章 土壤保全對策地域의 지정 및 관리 第17條(土壤保全對策地域의 지정) ①環境部長官은 대책기준을 넘는 地域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가 요청하는	第3章 土壤保全對策地域의 지정 및 관리 第17條(土壤保全對策地域의 지정) ①----- ----- ----<u>시장・군수・구청장이</u>---

地域에 대하여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管轄市・道知事와 協의하여 土壤保全對策地域(이하 “對策地域”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 ----- -----,
②市・道知事は 管轄區域중 특히 土壤保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地域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土壤汚染의 정도가 對策基準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對策地域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環境部長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 ----- -----대책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관할 시・도지사와 協의를 거쳐-----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第18條(對策計劃의 수립・施行) ①市・道知事は 對策地域에 대하여는 土壤保全對策을 위한 計劃(이하 “對策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施行하여야 한다.	제18조(對策計劃의 수립・施行) ①시장・군수・구청장은----- -----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와 協의를 거친 후-----,
②~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第19條(汚染土壤改善事業) ①市・道知事は 第18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汚染土壤改善事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오염원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토양보전	第19條(汚染土壤改善事業) ①시장・군수・구청장은----- ----- ----- ----- -----시장・군수・구청장은--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
양관련전문기관을 감리자로 지
정하여 오염토양개선사업을 감
리·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汚染
原因者가 汚染土壤改善事業을
實施하고자 할 때에는 環境部令
이 정하는 바에 따라 汚染土壤
改善事業計劃을 作成하여 市·
道知事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重要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第1項의 경우에 그 汚染原因
者가 存在하지 아니하거나 汚染
原因者에 의한 실시가 困難하다
고 認定하는 경우에는 市·道知
事는 當該 汚染土壤改善事業을
실시할 수 있다.

④第3項의 경우에 당해 對策地
域이 2이상의 特別市·廣域市·
道에 걸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
이 정하는 市·道知事が 당해
汚染土壤改善事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第3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검증기관으로 하여금

-----지
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군수·구청장-----

-----.

<삭 제>

<삭 제>

⑤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의하여 市・道知事が 汚染土壤改善事業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技術不足・事業費過多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市・道知事の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당해 사업에 대한 技術的・財政的 지원을 할 수 있다.	오염원인자에 의한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군수・구청장----- ----- -----.
第20條(土地利用등의 제한) 市・道知事は 對策地域안에서는 그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土地의 이용 또는 施設의 設置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第20條(土地利用등의 제한) 시장・군수・구청장은----- ----- ----- ----- -----.
第21條(행위제한) ①・② (생략) ③市・道知事は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행위 또는 施設의 設置로 인하여 土壤이 汚染되었거나汚染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行爲者 또는 施設의 設置者에게 土壤汚染物質의 제거 또는 施設의 撤去 등을 명할 수 있다.	第21條(행위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시장・군수・구청장은----- ----- ----- ----- ----- -----.
<u>제3장의2 토양관련전문기관</u> 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	<u>제3장의2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u> 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

정 등) ①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토양오염조사기관 : 다음 각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가.·나. (생략)

다.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도검사

라.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개선사업의 감리·감독

2. 누출검사기관: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누출검사를 실시하는 기관

② (생략)

③환경부장관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서를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및 검사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정 등) ①-----

-----지정받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1.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제11조의2제3항-----

라. 제15조의6제1항 단서 규정
에 의한 완료검사

2. ----- 제11조의2
제3항-----

② (현행과 같음)

③-----

--.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준수사항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u><신 설></u>	-----, <u>⑤토양관련전문기관의 토양오염 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환 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u>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 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관련 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23조의3(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 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 정될 수 없다. 1.~ 3.(생략) <u><신 설></u> 4. 임원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1 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23조의3(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 격사유) ----- -----, 1.~3.(현행과 같음) <u>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 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u> 5. -----제4호의 1 -----
제23조의4(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 정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 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	제23조의4(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 정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 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

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23조의3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23조의3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4.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한 때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23조의3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23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4.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한 때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때

6. 지정을 받은 후 2년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년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때. 다만, 제23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

<신 설>

<신 설>

령을 위반한 때

제23조의5(토양정화업의 등록) ①

오염토양의 정화를 위한 영업(이하 “토양정화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때에는 등록증을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의 대여 또는 도급받은 정화사업을 일괄하여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의6(토양정화업자의 토양환

	경평가) 토양정화업자가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환경평가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의 검사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신 설>	제23조의7(토양정화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23조의5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결격사유는 제23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23조의8(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토양정화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23조의7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23조의7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

<신 설>

<신 설>

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4. 등록 후 2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년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때

5.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토양정화사업을 일괄하여 하도급한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제23조의9(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토양정화업자의 계속사업 등) ①제23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있기 전에 착공한 사업에 한하여 토양정화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사업을 계속하는 자는 당해 사업을 완료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토양정화업자로 본다.

제23조의10(권리·의무의 승계)

①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제2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기관 또는 그 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이 법에 의한 종전의 지정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종전의 지정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第4章 補則

第24條(代執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오염 검사,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명령,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第1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汚染土壤

第4章 補則

第24條(代執行) 시장·군수·구청장-----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제12조-----

改善事業 實施命令 또는 第21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土壤汚染 物質의 제거·施設의 撤去등의 命令을 받은 者가 그 命令을 이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行政 代執行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代執行을 하고 그 費用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①시·
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토양오염
유발시설의 설치자에 대하여 감
독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에
출입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토양오염검사 및 그 결과
의 보존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시

[illegible]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①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②-----
-----토양관련전문기
관 및 토양정화업자-----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자-----

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생략)	----- -----,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의3(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별로 매년 특정토 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한 현황 및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 하여 행정처분을 한 실적을 다 음해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①시 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특정토 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한 현황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 실적을 취합하여 매년 2월말까지 환경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26조의4(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4(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 다.	제26조의5(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 ----- ----- --.

1.·2. (생략)

<신설>

<신설>

<신설>

1.·2. (현행과 같음)

3. 제23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의 등록 취소

제26조의6(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2. 제2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의 등록 및 변경 등록

제26조의7(토양관련전문기관의 기술요원등의 교육) ①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한 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당해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는 자를 고용한 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第5章 罰 則	第5章 罰 則
第29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제12조제3항의 規定에 의한 <u>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u>의 사용중지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2. (생 략) <u><신 설></u> 3. (생 략) <u><신 설></u> <u><신 설></u>	第29條(罰則)----- ----- ----- --, 1. 제15조의2제4항----- <u>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u>----- ----- 2.(현행과 같음) 2의2. 제15조의4제1호의 規定을 위반하여 <u>오염토양을 투기한 자</u>(제15조의6제1항의 規定에 의한 <u>정화검증</u> 또는 <u>완료검사가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한다</u>) 3.(현행과 같음) 4. 제23조의2제1항의 規定에 의한 <u>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한 자</u> 5. 제23조의5제1항의 規定에 의한 <u>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토양정화업을 한 자</u>
第30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30條(罰則) ----- ----- ----- --,

1. 第11條第1項 전 단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u>토양정화시설을 設置하거나 허위申告한 者</u>	1. ----- -----<u>토양정화시설</u>----- -----
<u><신 설></u>	1의2. <u>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의2의 規定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를 부실하게 하여 제15조의6 본문의 規定에 의한 정화검증 대상 미만으로 오염규모를 축소한 자</u>
<u><신 설></u>	1의3. 제10조의3제2항의 規定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생 략) 3.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후단신설>	2. (현행과 같음) 3. 제12조----- ----- ---(누출검사의 경우를 제외한 다)
<u><신 설></u>	3의2. 제15조의3제2항 본문의 規定을 위반하여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의뢰를 하지 아니하고 오염토양의 정화를 한 자 또는 동향 단서 제3호의 規定을 위반한 자
<u><신 설></u>	3의3. 제15조의3제3항의 規定에

<신 설>	의한 <u>오염토양반출신고</u> 내 용의 <u>검토를 받지 아니하고</u> 의 <u>오염토양을 반출한 자</u>
<신 설>	3의4. 제15조의4제2호의 <u>규정을</u> <u>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누출</u> <u>·유출시킨 자 또는 동조제</u> <u>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u> <u>염농도를 낮춘 자</u>
<신 설>	3의5. 제15조의6제1항의 <u>규정에</u> <u>의한 검증을 받지 아니하고</u> <u>오염토양의 정화를 한 자</u>
<신 설>	3의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의6제1항의 <u>규정에</u> <u>의한 정화검증 또는 완료검</u> <u>사를 부실하게 한 자</u>
4. 제19조제1항의 <u>규정에 의한</u> <u>감리·감독을 거부·방해 또는</u> <u>기피한 자</u>	4.----- <u>지도·감독</u>-----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6. <u>속임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u> <u>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u> <u>받은 자</u>	6.----- <u>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u> <u>거나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u> <u>자</u>
<신 설>	6의2. 제23조의2제6항, 제23조의 <u>5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u> <u>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u> <u>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u>

	<u>관련전문기관의 업무 또는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자 또는 도급받은 토양정화사업을 일괄하여 하도급한 자</u>
7. (생략)	7. (현행과 같음)
第32條(過怠料) ①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第32條(過怠料)----- -----, -----,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u><신 설></u>	3의2.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생략)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4의2. 제23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u><신 설></u>	4의3. 제23조의2제4항, 제23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u><신 설></u>	4의4. 제23조의5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u><신 설></u>	4의5. 제23조의6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양환경평가를 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⑥ (생 략)	6. 제26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②~⑥ (현행과 같음)